<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4. 1. 19.)

AB 글로벌 로우볼 증권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펀드코드: BC325)

투자 위험 등급 3 등급 [다소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얼라이언스번스틴 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는 선진시장 기업들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집합투자기구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며, **주식 위험, 파생상품 위험, 환위험, 유동성 위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AB 글로벌 로우볼 증권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기구인 AB SICAV I – 저변동 주식 포트폴리오(이하 "피투자 펀드")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투자함으로써 자본 성장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자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을 추구합니다. 피투자펀드는 보통 선진국 및 이머징마켓에서 설립되었거나, 선진국 및 이머징마켓에서 상당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회사들 중 운용자가 변동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는 지분증권에 주로 투자합니다.

분류

-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해당없음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연)	판매보수(연)	동종유형 총보수(연)	합성총보수·비용(연)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이내	0.915%	0.65%	0.97%	1.486%	254	417	587	953	2,04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	없음	1.565%	1.30%	1.24%	2.136%	224	438	639	1,021	2,158
	C2		1.365%	1.10%		1.936%					
	C3		1.165%	0.90%		1.736%					
	C4		0.965%	0.70%		1.536%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이내	0.565%	0.30%	0.63%	1.136%	169	293	424	706	1,542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0.765%	0.50%	0.84%	1.336%	140	287	442	775	1,76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없음	1.065%	0.80%	-	1.636%	172	352	541	949	2,160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e-P)		없음	0.665%	0.40%	-	1.236%	130	266	409	717	1,63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없음	0.965%	0.70%	-	1.536%	161	331	508	891	2,028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e-P2)		없음	0.615%	0.35%	-	1.186%	124	255	392	688	1,566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합성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합성 총보수·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펀드의 보수·비용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피투자펀드에서 부과하는 총보수·비용은 약 연0.56%으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종류 A형과 종류 C1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도 약 2년 6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류 C1의 경우 전환에 따른 보수 변동사항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3) 상기 종류 이외 종류 C-w, 종류 I, 종류 S, 종류 S-P에 대한 세부사항 및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2023.11.30일 기준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단위: %)

기 간	최근 1년 (2023.01.01~ 2023.12.31)	최근 2년 (2022.01.01~ 2023.12.31)	최근 3년 (2021.01.01~ 2023.12.31)	최근 5년 (2019.01.01~ 2023.12.31)	설정일 이후 (2016.4.18 2023.12.31)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15.47	0.80	6.77	9.36	7.38
비교지수	23.69	0.72	7.42	13.03	10.60
수익률변동성	9.94	13.66	12.37	15.59	13.72

(주1) 비교지수: MSCI World Index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입니다.
(주3)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전문인력
(2023.12.31 기준)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재간접)				운용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책임	이재욱	1988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	14개	27,494억원	25.19	-	25.19	-3.86	5.75년
부책임	유재흥	1970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	14개	27,494억원	25.19	-3.86	25.19	-3.86	16.5년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 지지 아니합니다.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환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초 투자자산은 이 투자신탁의 표시 통화인 원화 이외의 하나 이상의 이종 통화로 표시됩니다. 이로 인하여 기초투자자산의 통화 변동이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순자산가치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원화로 표시된 투자신탁재산에의 투자는 하나 이상의 이종 통화의 가치 변동에 의하여 원화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위험이 수반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표시 통화 대비 원화 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으로 환율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달러화로 표시된 투자신탁 자산에 대하여 헤지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헤지로 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이 환율 변동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 환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에서 편입하는 해외집합투자증권 금액에 상응하는 미달러화 가치에 대하여 환헤지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미달러화의 원화에 대한 목표 헤지비율은 80%~100%수준입니다.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증권가격 변동, 환율변동, 외환시장 상황 등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 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증권 등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헤지 계약의 만기후 재계약을 할 경우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의 유형, 매도 제한, 시장상황 등 다양한 요인으로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 매각이 어려운 경우, 보다 유동성이 높은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보다 중개 및 기타 거래 수수료 등 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극단적인 시장상황, 특히 매수 의향이 있는 매수인 부족으로 인하여 펀드가 그 포지션 또는 보유물량을 청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펀드가 더 낮은 가격을 수락해야 하거나 투자자산을 전혀 매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다른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부로 때때로 파생상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을 달성하고 수익률을 높이며 포트폴리오 분산을 목적으로 직접 투자의 방편으로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과 같은 다른 위험에 추가하여, 파생상품의 경우 가격산정 및 평가가 어려울 수 있으며, 파생상품의 가치변동이 관련 기초자산, 금리 또는 지수의 변동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에는 전통적인 투자자산에서 나타나는 위험과는 상이하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 더 큰 위험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주식위험	투자신탁의 기초 주식투자자산의 가치는 개별 투자대상회사의 활동과 성과에 따라, 또는 일반 시장과 경제상황,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때로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장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신흥시장	투자신탁은 선진시장에 소재한 발행회사의 주식증권에만 투자하는 경우보다 더 높은 가격변동성 및 현저하게 낮은 유동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 발행회사 유가증권에의 투자는 선진시장 발행회사 유가증권에의 투자에 비하여 더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위험	중소형 기업들의 지분증권(주로 주식)은 대형 기업 주식 보다 변동성이 더 크고 유동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8영업일(D+7)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9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없 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가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http://www.abfunds.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table>
<tr><td></td><td>
<table>
<tr><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
<tr><td>수익자</td><td>-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이하 '연금계좌'라 한다)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 등으로 과세합니다.</td></tr>
</table>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해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td></tr>
<tr><td>전환 절차 및 방법</td><td>①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1. 종류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합니다.
2. 종류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합니다.
3. 종류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 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 처리합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④1항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전환하지 아니합니다.</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얼라이언스번스틴 자산운용㈜ (☎ 02-3707-3400/ 홈페이지: www.abfunds.co.kr)
(외화자산 관련 위탁운용사: AllianceBernstein Hong Kong Limited)</td></tr>
<tr><td>모집기간</td><td>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 모집 · 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50조좌)</td></tr>
<tr><td>효력발생일</td><td>2024년 1월 19일 |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td></tr>
<tr><td>판매회사</td><td>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abfunds.co.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td></tr>
<tr><td>참조</td><td>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기구의 종류</td><td>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 colspan="2">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
<tr><td rowspan="2">판매
수수료</td><td>수수료
선취(A)</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10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수수료
미징구
(C)</td><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10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 rowspan="3">판매
경로</td><td>온라인
(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오프
라인</td><td>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tr>
<tr><td>온라인
슈퍼(S)</td><td>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able>
</td></tr>
</table>

기타	보수 체감 (CDSC)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랩(w)	판매회사 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 특정금전신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3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매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I)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5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50억 이상 개인, 75억 이상 법인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 연금(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 연금(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abfunds.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abfunds.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abfunds.co.kr)